

### 法史學會創立發起趣旨文

오늘날 우리 法學界는 꾸준하고 진지한 努力을 기울인 결과 점차 韓國的 法學의 기틀이 잡혀가고 있으며 法學 各分野의 學會가 자못 활발한 研究活動을 계속하고 있음은 學問의 發展을 위해 多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學問의 發展은 孤立된 個個人의 研究活動에 의하기 보다는 有機的 連關을 가지면서 相互 情報를 교환하고 共通의 目標과 關心下에 끊임없는 共同研究를 함으로써 보다 效果的으로 達成할 수 있음은 自明한 바입니다.

더우기 實定法은 大部分 西歐의 近代法 體系를 受容하여 制度的 充足性을 期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洪水처럼 밀어닥치는 外來法文化의 實效의 妥當의 受容을 위해서는 外來法의 史的 發展過程의 研究와 同時에 韓國의 固有法과 法制度의 科學的研究가 基礎作業으로서 先行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法史學은 그것이 史學의 一分野임과 同時에 一見 實用性없는 基礎法學이라는 認識 때문에 研究人口의 稀少性을 免할 길이 없었고 따라서 學問의 寄與度가 적었음은 否認할 수 없는 事實입니다.

이제 韓國的 法學樹立을 위한 自覺과 努力이 기울여지고 있는 오늘날을 맞이하여 때늦은 感이 있으나 法史學은 過去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現在와 나아가서는 未來를 위한 學問으로서의 本質과 使命을 지니고 있음을 再闡明하면서 孤立에서 벗어나 協同으로 停滯에서 벗어나 發展으로 指向하면서 韓國法學의 發展에 一翼을 擔當하고자 이에 本學會 創立을 發起하는 바입니다.

1973年 3月 3日

發起人一同